

제주지방법원 2023. 4. 3 선고 2022나1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3. 4. 3 선고 2022나12039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0가단625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철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4. 3.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0가단625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6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6,45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5.부터 2022. 4. 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의 항소이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하는 대금채권 외에도 2018. 12. 27.자 세금계산서 관련 조경토 대금 32,148,329원(1심보다 감액함), 2017. 10. 23.자 세금계산서 관련 차액 41,149,000원, 2017. 11. 8.자, 2017. 12. 3.자, 2017. 12. 18.자 각 세금계산서 관련 차액 합계 7,293,000원의 각 채권이 있다.

나. 원고의 부대항소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에 각 납품한 모래대금 상당의 채권이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위 항소이유, 원고의 위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15행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16행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과일 값 625,000원 포함)”을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과일 값 625,000원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20행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11행 “2018. 8.경”을 “2017. 8경”으로, “J회사”을 “R회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16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뒤에 “원고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21행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과일 값 625,000원 포함)”을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과일 값 625,000원 포함)”으로 고친다.

4. 추가판단(제1심판결 제4면 위에서 5행이하 관련 판단에 관하여)

가. 2018. 12. 27.자 세금계산서 관련 조경토 대금 32,148,329원

1) 피고 주장

원고는 2017. 5. 1. 피고로부터 덤프트럭 203대 분량 조경토를, 2017. 7. 1. 덤프트럭 29대 분량 조경토를 추가로 납품받아 합계 232대 분량 조경토를 납품받았고, 피고는 2017. 7. 8. 위 232대 분량 조경토 중 54대 분량 조경토의 거래를 원고와 합의하에 취소하고 원고를 통하여 G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G에 공급한 조경토를 제외한 나머지 178대(=232대 - 54대) 분량 조경토에서 원고가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2017. 7. 1.자 덤프트럭 29대 분량 조경토를 제외한 나머지 149대(=178대 - 29대) 분량 조경토의 대금지급책임이 문제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조경토 대금으로 32,148,329원{덤프트럭 149대 × 덤프트럭 1대당 물량 17루베 × 루베당 단가 11,538원 × 1.1(부가가치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32, 42,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경토 대금 32,148,329원 상당의 채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당시 직원이었던 L가 원고에 대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퇴사하면서 정상적인 장부를 은닉하고 수정한 장부만 남겨두고 갔기에 원고에 대한 조경토대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거나 원고가 미지급한 조경토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L는 피고에 근무하던 당시인 2018. 1.경 사전에 비용관련하여 얘기가 없던 세금계산서들이 발행되고 있으니 작은 금액이라도 자금집행계획을 먼저 말한 뒤에 결재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자주 보냈는바, 오히려 L가 거래장부를 제대로 적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정상적인 장부를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조경토가 품질문제로 납품을 못하게 되자 피고와 각자 조경토를 처분하여 손실에 충당하자는 합의를 한 뒤, K회사, R회사 등에 처분하여 손실을 일부 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러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임의대로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42호증(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원고가 H회사와 K회사에 조경토를 합계 67,622,500원에 매각하였다는 과세자료는 있는 반면, R회사에 매각한 과세자료는 없는 사실과 R회사 대표가 원고로부터 조경토를 납품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작업로그(을 제19호증)에 2017. 5. 1. 조경토 거래와 관련하여 물량에 단가를 곱한 총 금액 41,779,098원에서 하역비 5,250,000원 및 기타 비용

12,7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749,098원이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임 24,700,000원을 공제한 '-950,902원'이 손익란에 기재되어 있어 위 조경토 거래를 손실로 처리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고, 위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따르면 H회사, K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주식회사 등 원고가 조경토를 매각한 다양한 업체가 확인되는바, 원고가 조경토를 처분하였다고 언급한 R회사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손실충당 합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선옥, 판사 황방모, 판사 이황선